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78
----------	-----

2021. 4. 30.(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4월 22일

－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양기 감사관)

가. 제안사유

-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개정, 2021. 6. 23 시행)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민간 위촉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 소속 공무원 위원을 기획관리실장, 감사관으로 지정
- 오기사항 정비(안 제5조제3항)
  - 제1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수정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였고,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 소속 공무원 위원을 기획관리실장, 감사관으로 지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7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4월 1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8
----------	-----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개정, 2021. 6. 23. 시행)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민간 위촉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 소속 공무원 위원을 기획관리실장, 감사관으로 지정
- 오기사항 정비(안 제5조제3항)
  - 제1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수정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 공무원 2명으로 한다.”를 “기획관리실장,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u>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u>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1명</u>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7명</u>의 위원은 <u>법관</u>,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b>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b></p> <p>제1조(목적) ----- ----- ----- ----- <u>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u>----- ----- -----.</p> <p>제2조(구성) ① ----- ----- ----- ----- <u>13명</u>----- ----- ----- ----- ----- -----.</p> <p>1. <u>9명</u>----- <u>판사·검사·변호사</u>, ----- ----- ----- ----- -----</p>



현 행	개 정 안
<p>2. 4명의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원 2명과 <u>소속공무원 2명으로 한다.</u></p> <p>②~③ (생략)</p>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p> <p>①~② (생략)</p> <p>③ <u>제1조제1항제1호</u>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p>	<p>2. ----- ----- <u>기획관리실장, 감사관</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조제1항제1호</u>----- ----- ----- -----.</p>

## 관련법령 발취

### □ 공직자윤리법('20. 12. 22. 개정, '21. 6. 23. 시행)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